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건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8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7.

발 의 자 : 김 건 · 박충권 · 곽규택
김기웅 · 정성국 · 나경원
강선영 · 김미애 · 이소희
윤상현 · 조지연 · 유용원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외무공무원법」 및 관계 법령에 따른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13개 주요 공관장으로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경우에는 국회에서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3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888호) 및 「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88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한국방송공사”를 “특임공관장(가장 높은 직무등급의 경우에 한정한다)·한국방송공사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회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임공관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
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
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